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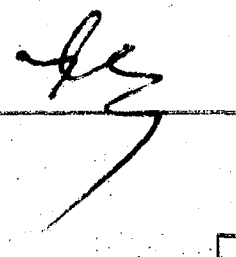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2115

시행일자 1996. 11. 7.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회장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회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회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8호. 끝.

#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홍보담당관

제목 훈령발령 홍보

1. 서울특별시회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

가. 발령예정일 : 1996. 11. 2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8호(생략). 끝.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휘장규정

- 서울특별시 휘장이 변경됨에 따라 휘장에 관한 재  
반사함을 규정하고 사용방법을 정함.
- 휘장의 기본도안 및 색상을 규정하고, 휘장은 인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자연·인간  
·도시의 맥락 속에서 녹색 산은 환경사랑, 청색 한  
강은 역사와 활력,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  
을 함축하고 있으며, 종전의 휘장이 들어있는 시설물  
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휘장설정의 건('1947.4.1.)

[서고 제17호]는 폐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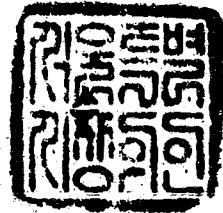
163

서울특별시회장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 서울특별시 휘장규정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휘장이 변경됨에 따라 휘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휘장의 기본도안 및 색상을 정함.(안 제3조·별표)
- 휘장은 인간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자연·인간·도시의 맥락 속에서 녹색 산은 환경 사랑, 청색 한강은 역사와 활력,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함축함.(안 제4조)
- 종전의 휘장이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CI(이미지) 개발 계획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 서울특별시휘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휘장(이하 ‘휘장’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휘장의 도안과 색상) ① 휘장의 기본도안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② 휘장의 색상은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산을 상징하는 부분은 서울녹색(별색 : PANTONE 3272C, 4원색 : C95%+Y60%)을, 해를 상징하는 부분은 서울살색(별색 : PANTONE 708C, 4원색 : M50%+Y30%)을, 한강을 상징하는 부분은 서울청색(별색 : PANTONE 300C, 4원색 : C100%+M35%)을 각각 사용한다.

제4조(휘장의 의미) 휘장은 한글 “서울” 을 서울의 산·해·한강으로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 중심 도시” 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자연·인간·도시의 맥락 속에서 녹색 산은 환경 사랑, 청색 한강은 역사와 활력,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함축한다.

제5조(사용) ① 휘장의 사용은 서울특별시를 상징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집은 기본편, 응용편으로 구분 제작 사용하며 관리규정집 제작 이전에 새 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6조(회장 응용) 회장 등의 응용에 관하여는 회장응용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응용시스템 개발 전 응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회장 교체 방법) 팔각 형태의 종전 회장이 들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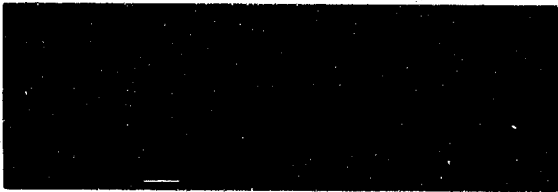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관련고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회장설정의건(1947. 4. 1. 서고 제17호)은 이를 폐지한다.

[ 별 표 ]

1. 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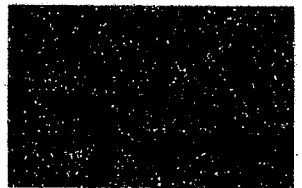
2. 색 상



서울 흰색 : 별색-PANTONE 300 C  
4원색-C 100%+M 35%



서울 녹색 : 별색-PANTONE 3272 C  
4원색-C 95%+Y 60%



서울 살색 : 별색-PANTONE 708 C  
4원색-M 50%+Y 30%

3. 작도법(그리드)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725~7 / 전송 731~6729  
 서울시 홈페이지 URL : <http://www.metro.seoul.kr>  
 처리부서 : 홍보담당관(시정본관 219호) 담당 최영수

문서번호 홍보 84000 - 47P  
 시행일자 1996.11.19

수신 법무담당관

선			지		
결			시		
점	일자	1996. 11. 20	결		
수	번호	47P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목 서울특별시 휘장 규정(훈령) 발령의뢰

서울특별시 휘장이 변경됨에 따라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휘장 규정을 제정하였기 발령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휘장 규정(훈령) 1부. 끝.

홍 보 담 당 관



## 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 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개정규정

- 위생업소의 폐쇄·변태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제조등 위법사항에 대해 PC통신신고 및 엽서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을 “행정처분을 한 후” 지급하여 왔으나 그 지급기간이 장기간 지체되어 이를 개정 “행정처분전 행정처분청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와 “신고자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신고한 경우” 에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표시기간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등을 진열판매하였을 때에도 부정·불량식품등으로 규정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킴.